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정	1999. 4. 27	조례 제 216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58호
	2008. 10. 8	조례 제 957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9. 4. 24	조례 제 990호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170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12. 15	조례 제1530호
전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9. 27	조례 제21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또는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檢定)·관리 사무 등 용인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업무 소관 실·국·소장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을 용인시보 또는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

하여 이행각서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을 말한다)등에는 용인시 심벌마크만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1. 9. 27>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주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

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공모·위탁의 제한) 시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의 공모·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용인시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처리 과정, 처리 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8조”로 한다.

④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로 한다.

⑤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

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20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용인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후단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본문 및 제21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 조례」 제15조 각 호”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